



## 제 3 장 수요관리 재정계획

### 1.0 소요사업비

#### 1.1 총괄 사업비

청주시의 물 수요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중 노후관개량,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은 ‘제1편 제5장 시설개량계획’ 사업비와 중복되어 제외하였다.

<표 3.1-1> 소요사업비 총괄계획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율(%)	비고
총사업비		3,500	100.0	
유수율 제 고	소 계	2,800	80.1	
	노후관개량	-	-	시설개량계획 중복
	누수탐사	-	-	시설개량계획 중복
	블록시스템구축	-	-	시설개량계획 중복
	계량기 교체	2,800	80.1	
물재이용	소 계	-	-	
	중수도보급	-	-	기존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	-	-	기존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장내)	-	-	기존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장외)	-	-	원인자 설치
기 타	소 계	700	19.9	
	절수기기 보급	250	7.1	
	교육 및 홍보	450	12.8	

주) 1. 교육 및 홍보비는 절수기 보급과 수도물의 절수 캠페인, 운동, 팸플릿, 광고 등의 홍보비임  
 2. 수도관 정비 사업비는 시설개량계획에 기 산정 반영됨

## 1.2 연차별 소요사업비

<표 3.1-2> 연차별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차별 사업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사업비	3,5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유수율 제 고	소 계	2,800.0	560.0	560.0	560.0	560.0	560.0
	노후관개량	-	-	-	-	-	-
	누수탐사	-	-	-	-	-	-
	블록시스템구축	-	-	-	-	-	-
	계량기 교체	2,800.0	560.0	560.0	560.0	560.0	560.0
물재이용	소 계	-	-	-	-	-	-
	중수도 보급	-	-	-	-	-	-
	빗물이용시설설치	-	-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장내)	-	-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장외)	-	-	-	-	-	-
기 타	소 계	700.0	140.0	140.0	140.0	140.0	140.0
	절수기기 보급	250.0	50.0	50.0	50.0	50.0	50.0
	교육 및 홍보	450.0	90.0	90.0	90.0	90.0	90.0

주) 1. 교육 및 홍보비는 절수기 보급과 수돗물의 절수 캠페인, 운동, 팸플렛, 광고 등의 홍보비임

2. 수도관 정비 사업비는 시설개량계획에 기 산정 반영됨

## 2.0 재정계획

청주시에 물 수요관리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는 3,50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수도법 제75조에서는 “국고보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상수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용자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수도법 제75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02. 12. 26)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원조달은 수도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②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월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수준으로, 일반회계 등 타회계의 지속적인 보조가 없이는 상수도사업 운영 곤란 →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물 수요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36,668백만원에 대하여는 도 및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1 자원조달 계획

### ① 우수율제고

- 노후관정비사업(2016년) : 시·군비 70%, 도비 30% 부담
- 노후관정비사업(2017부터 국고보조 적용)  
: 국비 70%, 시·군비 15%, 도비 15% 부담
- 누수탐사, 블록시스템구축, 관망도작성, GIS구축, 노후계량기교체사업  
: 시·군비 70%, 도비 30% 부담

### ② 중수도시설

- 공공시설 : 시·군비 100%,
- 민간시설 : 민간자본비 100%

### ③ 빗물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 : 공공시설-시·군비 100%, 민간시설-민간자본비 100%
- 대형빗물저류시설 : 국비 30%, 시·군비 70%

### ④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하천유지용수 : 국비 70%, 시·군비 30%
- 농업용수 : 국비 70%, 시·군비 30%
- 공업용수 : 국비 70%, 시·군비 30%
- 공업용수(민간투자사업) : 국비 40%, 시·군비 10%, 민간자본비 50%
- 생활용수·도시재이용수 : 국비 70%, 시·군비 30%

### ⑤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공업용수 : 국비 40%, 시·군비 10%, 민간자본비 50%
- 생활용수·도시재이용수 : 국비 70%, 시·군비 30%

**<표 3.2-1> 투자비 할당률**

구 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자본비	비고	
유수율제고	노후관 정비	2016년	-	30	70	-	
		2017년이후	70	15	15	-	기획재정부 국비보조시
	누수탐사		-	30	70	-	
	블록시스템구축		-	30	70	-	
	관망도작성		-	30	70	-	
	GIS구축		-	30	70	-	관망도작성 포함
	노후계량기교체		-	30	70	-	
빗물이용	빗물이용 시설	공공시설	-	-	100	-	
		민간시설	-	-	-	100	
	대형빗물저류시설		30	-	70	-	
중수도시설	공공시설		-	-	100	-	
	민간시설		-	-	-	100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천유지용수		70	-	30	-	
	농업용수		70	-	30	-	
	공업용수		70	-	30	-	
	공업용수(민간투자사업)		40	-	10	50	
	생활용수·도시재이용수		70	-	30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업용수		40	-	10	50	
	생활용수·도시재이용수		70	-	30	-	